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춘 곤 의원

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! 김 춘 곤 의원입니다.

지난 10월 13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,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되 는 경우를 감안하여 부지경계선과 면제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

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